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계잉여금 국민연금기금 출연 근거 마련〉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34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8. 11.
3. 회 부 일 : 2026. 0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증가분 중 결산을 통하여 확정되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계잉여금의 법정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세계잉여금의 국민연금기금 출연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1)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사용 가능(제2항)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세계잉여금-(1))의 30% 이상(제3항) (3) 국가채무 상환 : (세계잉여금-(1)-(2))의 30% 이상(제4항)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 가능(제5항) <u><단서 신설></u> (5) 잔액: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제8항)	○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 (5) (현행과 같음)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¹⁾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

- 1)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 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용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후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세계잉여금의 사용처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출연을 추가하고, 해당 출연 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이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여력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임.

세계잉여금을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경기호조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미래의 연금 지출에 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기금의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의 세계잉여금 활용방식에 국민연금기금 출연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음.

다만, 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서 세입 여건과 재정집행 결과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국민연금의 재정 보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세(금) 정 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16	60,920	38,091	6,849	4,794	11,186	-
2017	100,422	59,762	12,198	8,539	19,923	-
2018	106,575	105,292	385	269	629	-
2019	619	619	-	-	-	-
2020	57,193	22,653	10,362	7,253	16,924	-
2021	179,949	113,382	19,970	13,979	32,618	-
2022	60,248	4,103	16,843	11,790		27,511
2023	364	364	-	-	-	-
2024	4,458	-	1,337	936	-	2,185
2025	828	828				

자료: 재정경제부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2025년 4월 보험료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시행하였으며, 2026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보건복지위원회 및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개혁의 논의 경과 및 기금재정 전망에 따라 세계잉여금의 국민연금기금 출연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도 있음.

한편,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0533호, 김동아의원 대표발의)²⁾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및 처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기금 재원 보전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임.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④ (생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 ----- ----- -----사용하거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출 연 및 제5항에 따른 국민연금기 금에의 출연은----- ----- ----- -----.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